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100042-10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 24 집

국민권익위원회

| 일러두기 |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2025년도에 처리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등의 주요 사례를 모은 것입니다.

본 사례집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되고, 그 처리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포상, 구조금의 규모 등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직자에게 동일·유사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되고, 국민에게는 부패·공익신고 및 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본 사례집에 수록된 일부 사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 또는 소송 등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목 차 | Contents

I 부패 행위 신고사건

01. 2025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공공기관 발주용역 부적정 수행 관련 부패행위 ····· 10
2. 교비회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부패행위 ····· 11
3. 국가연구과제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횡령 관련 부패행위 ··· 12
4. 연구논문 수록 데이터 조작 관련 부패행위 ····· 13
5. 공공기관 평가위원 수당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14
6. 사립학교 교사의 학교 물품 임의 판매 부패행위 ····· 15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7. 민간업체 특혜 재정지원 등 부패행위 ····· 18
8. 군 부대 리스사업 중고납품 부패행위 ····· 19
9. 연구원 임직원의 배임 등 부패행위 ····· 20
10. 청년주택 리모델링 매입사업 관련 부패행위 ····· 21
11. 보조금 수급 단체의 부패행위 ····· 22
1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용역입찰 업무방해 부패행위 ····· 23
13. 공공기관 감리용역비 편취 등 부패행위 ····· 24
14. 공직자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패행위 ····· 25

II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1. 2025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등 부정수급 ····· 30
2.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 31
3. 포스트코로나 리부트 프로젝트지원사업 부정수급 ····· 32
4. 유기질비료 및 농업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33

목 차 | Contents

5.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 34
6. 실업급여 부정수급 ····· 35
7.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금 부정수급 ····· 36
8.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37
9.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 38
10.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39
11.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 40
12.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41
1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정수급 ····· 42
14. 기초생활수급비·한부모가족지원금·전세임대대여금 부정수급··· 43
15. 계속종사장려금 부정수급 ····· 44
16.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 45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48
18. 의료로봇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49
19.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50
2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 51
21. 기초종목 육성사업비 부정수급 ····· 52
22.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 53
23. 문화예술보조금 부정수급 ····· 54
24.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 55
2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56
26.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 57
27.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 58
28.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 부정수급····· 59
29.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 60

Ⅲ 공익신고 사건

01. 2025년 공익신고 사건

1. 건설 폐기물의 불법 매립 행위 ····· 64
2.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 65
3. 사료제조업자의 품질검사 위반 ····· 66
4. 선박 최대 승선 인원 초과 탑승 ····· 67
5. 의사 처방전 없는 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 68
6. 근로시간 초과 및 외국인 불법 고용 ····· 69
7. 철거 등 작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 ····· 70
8. 폐기물 오폐수 무단 배출 ····· 71
9. 마약류 방치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 72
10.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 73
11.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 74
12.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 75
13.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 76
14. 국유재산 무단점유 ····· 77
15. 인터넷, TV 불법 텔레마케팅 및 개인정보 무단 활용 ····· 78
16. 비위생적인 조리실 관리, 식품 재사용 ····· 79
17. 불법 기숙학원 운영 ····· 80
1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자동차 검사대행 ····· 81
19. 상표등록 표시 위반 등 ····· 82
20.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허위 조작 ····· 83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선임 위반 ····· 84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2.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 86
23. 환자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정청구 ····· 87
24. 무허가 가설 건축물 설치 ····· 88
25. 고객 및 가맹점 동의없이 금융정보 판매 및 불법 수집 ····· 89
26.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허위 신고 ····· 90

목 차 | Contents

Ⅳ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 신고」 관련 보상금 신청 … 94
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 신고」 관련 보상금 신청 … 95
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96
4.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수령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97
5. 「AI 살처분 보상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98
6. 「사무장병원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99
7. 「연구기자재 무단 반출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00
8.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01
9. 「창업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02
10. 「장애인 근로지원인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03
11.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04
1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 105
13. 「의료취약자 지원사업비 등 편취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 106
1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 107

0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5.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10
16.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특혜제공 등 사건」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 … 111
17.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12
18.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13
19.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14
20. 「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수급 신고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 … 115
21. 「의료기기 불법 제조 및 유통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 … 116
22.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지급 신청 … 117

Ⅴ 참고자료

1. 부패·공익신고제도의 이해 …… 122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 126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 130

I

부패행위 신고사건

1. 2025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 1 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2025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분과 2025-39호

01 공공기관 발주용역 부적정 수행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3. 24.)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수출플랫폼 지원사업 수행용역'을 총괄한 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허위로 구매오퍼나 수출실적을 입력한 뒤 해외바이어 오퍼를 정상 처리한 것처럼 용역 이행실적을 부풀려 용역비를 부당하게 편취함

② 검토결과 ○○부,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대상 기간 수출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허위 실적 등이 과다 계상되었고, 이와 같은 실적이 피신고자의 사업부서 성과지표로 설정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수출실적 허위 달성 보고 및 선금 허위 교부 등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11명
- **○○부** : 부정행위 실적을 최종 결과에서 제외, 시정조치 요구를 통한 자체검수 절차 강화, 기존PM 교체 등 적절한 검수 및 후속 조치 이행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5-42호

02 교비회계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4. 7.)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등 관계자로서, 교비회계로 자신들이 이용할 사무실, 숙소, 정원 등을 설치하고 각종 비품을 구입하였으며,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식사를 제공받음

② 검토결과 ○○도 교육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교비회계로 자신들이 사용할 사무실, 휴게소, 숙소, 정원, 전용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5년여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도 교육청** : 교비회계 횡령 혐의, 급식소 무전 취식 등이 확인되어 수사의뢰 6명, 고발 80명, 징계 9명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5-78호

03 국가연구과제 참여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횡령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6. 23.)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대학교의 학과장 및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들이 지급 받은 인건비, 연구수당에 대해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함

② 검토결과 ○○부, △△부,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은 학생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를 반환받아 관리·사용한 사실, 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연구원으로부터 연구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여 수수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부** :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 편취를 확인하여 부정 집행금액 환수, 인사상 조치, 참여제한처분 등 조치 예정
- **△△부** : 피신고자들이 학생인건비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관련하여 추후 제재처분평가단 등 상정 예정
- **경찰청** : 인건비 및 연구수당 편취, 연구물품 대금 편취 등 혐의 인정되어 송치 2명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5-87호

04 연구논문 수록 데이터 조작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7. 7.)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청 소속 연구직 공직자들로서, 연구논문의 결과 도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해당 연구논문 결과 발표 실적을 개인 성과계약 등에 유리한 지표로 활용함

② 검토결과 ○○○○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은 데이터가 그룹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피신고자들의 논문 변조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청** : 연구부정행위(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고자 중징계 및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조치 요구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5-132호

05 공공기관 평가위원 수당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9. 29.)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이 사건 평생교육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로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등교육법 상 인가를 받은 대학과 같이 운영함

피신고자 2는 위 평생교육원 소속으로서, 교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교수 명칭을 사용하며 수년간 지자체가 시행한 다수의 공공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확한 액수가 확인되지 않은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받음

② 검토결과 교육부,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평생교육원 운영의 위법성 여부 및 위와 같은 위법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금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교육부** : 대학 명칭 부당 사용, 교수 임명장 부당 발급 등 관련 사실 확인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완료하고, 위 평생교육원이 미등록 교육과정에 대한 학습비를 징수한 것 등과 관련하여 납부자를 기망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형법상 범죄 해당 여부 수사기관 의뢰
- **경찰청** : 피신고자 2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5-162호

06 사립학교 교사의 학교 물품 임의 판매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5. 12. 1.)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사립학교 교사로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수 차례 학교 교육물품을 임의로 판매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가 학습 운영에 필요하다며 구입한 물품의 목록과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매물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을 볼 때, 피신고자가 임의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학교 교육물품을 판매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926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송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 1 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분과 2022-114호

07 민간업체 특혜 재정지원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2. 12. 5.)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시 직원들과 A사업소의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자는 ○○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설비개선 및 설비교체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자신들의 비용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시로부터 시설공사비, 보험료 등 유지보수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아 지방재정에 손실을 가함

② 검토결과 △△도에 이첩

③ 이첩사유 ○○시 직원들과 이 사건 사업시행자 담당자들의 공모 또는 ○○시 담당 팀장들의 묵인하에 실시협약의 근거 없이 유지보수, 보강공사, 환경개선 공사 등의 공사비용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에게 부당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지원받은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당편취한 정황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도** :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태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측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그 복구 공사비용을 처리하여야 하나, ○○시로부터 태풍 피해복구 공사비용을 지원받은 바 그 금액 17,820천원을 환수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내부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에 대하여 부서 경고 및 업무 관련자 직무 교육 실시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3-43호

08 군 부대 리스사업 중고납품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3. 5. 15.)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군부대에 취사 장비를 리스로 납품하는 업체의 관계자로서, 세척, 라벨 재부착 등의 작업을 거친 식기세척기 등 중고물품을 납품하면서 마치 신품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납품 대금을 편취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신고자의 진술, 각종 증거자료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피신고자가 이미 군부대에서 사용했던 중고 식기세척기를 라벨 교체, 모터 교체, 제조 일자 조작 등을 통하여 신품으로 조작하여 납품하고 그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는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후, 신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중고품을 납품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09 연구원 임직원의 배임 등 부패행위

관계기관 송부(2023. 11. 2.)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공공기관의 연구원들로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하는 전문기관에 이미 개발된 제품임을 숨긴 채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연구개발비를 교부받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관련자 진술 청취, 증거자료를 통하여 볼 때, 피신고자가 개발장비의 기 개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과제를 신청하였거나 사업비 유용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연구개발비 편취와 관련하여 사기 등 혐의로 11명 송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4-56호

10 청년주택 리모델링 매입사업 관련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4. 22.)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A협동조합의 관계자 및 B건설업체 관계자들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인 A협동조합은 시공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B건설업체의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받아 청년주택 용도변경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비 10억 원 상당을 편취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A협동조합은 직접 시공이 불가하므로 관계기관(○○공사)에는 B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신고한 후, 실제 시공은 A협동조합 소속 직원들이 현장대리인 등으로 위장하여 공사를 지휘·관리하면서 임의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들의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및 불법 시공이 확인되어 송치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11 보조금수급 단체의 부패행위

관계기관 송부(2024. 5. 23.)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보조금을 수급하는 A단체의 관계자들로서, A단체 내의 친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는 각 개인들이 부담해야 함에도, 친목모임의 회비를 A단체의 보조금 예산에서 임의 지출하고, 군(軍) 경력을 호봉 산정 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호봉을 승급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감

② 검토결과 ○○도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의 제출 자료를 검토한 결과, A단체 내 친목모임을 위한 회비가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이 확인되고, 피신고자들의 군(軍) 경력이 호봉에 반영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 기관인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도** :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인 친목모임의 회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점, 호봉을 잘못 산정한 점이 확인되어 7,935,000원 환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12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용역입찰 업무방해 부패행위

관계기관 송부(2024. 6. 5.)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A공공기관의 직원인 자들로서, 피신고자들이 소속된 기관이 실시한 용역입찰에서 특정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임의로 기술평가점수 1위 업체의 평가점수를 하향하고, 특정 업체의 점수를 상향하는 등 A공공기관의 용역계약 업무 및 입찰업무를 방해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이 특정 업체에 기술평가 최고점을 부여하기 위해 각 업체별 최고·최저 평가점을 제외한 총점과 평균점 등을 사후에 기재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심사위원들이 채점한 기술평가점수를 조작한 것이 확인되어 송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분과 2024-94호

13 공공기관 감리용역비 편취 등 부패행위

1분과위원회(2024. 6. 24.)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전기감리 업체의 대표인 자로서, 피신고자 소속 업체는 하도급이 금지되는 감리용역임에도 낙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감리용역을 하도급 받아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부패행위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부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 업체는 하도급이 금지된 전기감리용역임에도 낙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전기감리용역을 하도급 받고, 허위로 감리원 배치확인서 등을 제출한 정황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업체에 하도급을 준 낙찰업체들로부터 허위 감리원 배치 확인서, 작업 일보 등이 발주기관에 제출된 점, 발주기관으로부터 이들 업체에 감리용역비 118,768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점이 확인되어, 업체 관련자 경고(12명), 주의(4명) 조치 및 낙찰업체로부터 부당 지급된 감리용역비 약 1억 2천만 원 회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14 공직자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부패행위

관계기관 송부(2024. 11. 4.)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A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A공공기관의 회의실 공사, 열차단 필름 공사, 책상 배치를 위한 설계 업무 등을 하면서 특정 업체가 위 공사, 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남용하여 수의계약을 준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는 수의계약 시 3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업체로부터만 3건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업무를 하는 등 감독기관인 ○○부의 감사가 필요함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가 소속기관 수의계약 관련 계약 규정을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감봉 1월 조치 및 피신고자의 직근 상급자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II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2025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 2 장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1



2025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분과 2025-8호

01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1. 6.)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함)의 시설장인 피신고자는 경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호봉을 책정받고, 시설장이 받을 수 없는 퇴직적립금과 시간외수당 및 과도한 직책 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시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프로필에 기재된 센터장 입사 연도가 센터의 센터장 임명 문서에 기재된 연도와 상이한 점, 시설장인 피신고자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용자의 지위임에도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시간외수당 역시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시** : 피신고자와 직원들이 공모하여 경력 등을 거짓으로 증명하여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되어 총 378,38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756,770,000원 부과

 ※ 통보일자 : 2026. 4. 6.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같은 법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분과 2025-21호

02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1. 20.)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 □□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자로서, ○○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딸기생산시설에 포그시스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음에도 포그시스템, 저온저장고가 포함된 비닐하우스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도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가 정부보조금으로 포그시스템,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으나 포그시스템, 저온저장고가 포함된 비닐하우스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것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신고자가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자료 및 ○○도 회신문서에도 정부보조금으로 설치한 포그시스템, 저온저장고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며 5년간 처분이 금지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도**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50,75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5. 12. 2.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지방보조금법(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8조(벌칙) 제2호,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항

03 포스트코로나 리부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4. 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 □□구에 소재하는 ㈜△△의 대표로서, ○○시가 주관하는 '2021년 사회적경제 포스트코로나 리부트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에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한 실적을 법인 ㈜△△의 실적인 것처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시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가 ○○시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미국 수출 실적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해 확인 필요

④ 처리결과

- **○○시** : 피신고자가 사업계획서에 미국 수출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지원사업 신청이 처음부터 무효에 해당하여 3,492만 원 환수, 제재부가금 174,590,000원 부과

 ※ 통보일자 : 2025. 11. 4.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7조(벌칙)

04 유기질비료 및 농업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4. 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군에 소재한 지역농협으로서,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유기질비료의 배부 업무를 대행하면서 유기질비료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 임의로 배부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등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가 △△부 지침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혐의가 있어 수사 및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 소속 직원 3명을 유기질비료 15,510포(23,260,000원 상당)를 신청자가 아닌 자에게 배부한 혐의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5. 9. 10.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함)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의 반환)

05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5. 12.)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기업체의 대표로서 서로 공모하여 ○○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 2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신고자를 채용하면서 피신고자 1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신고자를 피신고자 1이 대표자인 기업의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추가로 허위로 등록된 연구원이 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한 점 등을 볼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참여연구원의 연구노트가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 참여 인력 허위 등록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인건비 집행액 96,360,000원을 피신고자들로부터 환수하는 처분

 ※ 통보일자 : 2026. 4. 14.

- **경찰청** : 피의자들이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모하여 허위의 연구원을 등록한 후 인건비 명목으로 74,1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6. 1. 26.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사항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형법」 제347조(사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항,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06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5. 12.)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함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는 가게의 대표자 명의를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개업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했으며,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자 가게 대표를 지인 명의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점이 확인되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19,240,000원 반환명령 및 「고용보험법」 제58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5. 9. 19.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116조(벌칙)

07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6. 5.)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창업중심대학 예비창업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인건비를 돌려받고, 기존 홈페이지를 신규로 개발한 것처럼 하여 사업비를 지급받는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가 신고자에게 인건비 페이백을 요청했고 신고자의 동의 후 신고자 계좌로 인건비를 입금한 점, 인건비 페이백을 숨기기 위하여 피신고자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고 신고자와의 만남을 추진한 점 등이 확인되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신고자가 허위로 참여인력을 등록하고 과제물 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점 등이 확인되어 지원금 18,000,000원 환수 및 참여 제한 5년 처분

 ※ 통보일자 : 2026. 4. 7.

- **경찰청**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6. 2. 9.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5-92호

08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7. 7.)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병원의 이사장으로, 간호인력을 실제와 달리 신고하여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음

② 검토결과 ○○부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기관이 2024년 4월경 ☆☆병원을 방문하자 피신고자가 원래 근무표가 아닌 다른 근무표를 병원에 게시했던 점, 2023년 1월 근무표와 △△기관에 간호인력을 신고한 내역이 상이한 점, 피신고자 및 근무하는 직원들을 입원환자로 둔갑시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등이 확인되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산정기준 위반 등으로 24,446,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6. 1. 21.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국민건강보험법」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99조(과징금), 제115조(벌칙),「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9조(과징금),「형법」제347조(사기)

분과 2025-91호

09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7. 7.)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기업체의 대표와 직원들로서,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조작된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대검찰청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참여인력의 과제 참여율이 100%를 초과함에도 인건비를 허위청구한 점, 피신고자2, 3의 명의로 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정산을 한 정황 등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대검찰청** : 피신고자 중 일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26. 1. 15.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10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7. 2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사립대학교 총장으로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보조금으로 교육시설 보수작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서 대학교 설립자의 동상 주변 보수에 사용함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가 교육시설 보수작업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파손된 경계석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닌, 설립자 동상이 위치해 있는 경계석으로 소나무와 자갈의 위치가 설립자의 동상 사진에 있는 것과 동일해 보이는 등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업비 1,830,000원을 환수하였고, 신고사항 외 부적정 집행 사실 및 집행 비목 오류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636,88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6. 3. 13.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분과 2025-104호

11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 보조금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8. 18.)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의 대표이고, 피신고자 2는 ㈜◇◇의 대표임. 피신고자 1과 2는 공모하여 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등 정부지원 과제비를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 1이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의 직원 인건비로 유용한 점이 확인되어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 1과 2이 공모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인건비 40,000,000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2026. 6. 23.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보조금법 제40조(벌칙) 제1호,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5-105호

12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8. 18.)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 산하 △△기관으로부터 일감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구축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보조사업 전담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제품 사출금형을 피신고자 회사에서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조사업 전담기관이 실제 금형의 납품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보조금이 사용된 거래 또한 금형이 납품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신고자가 거짓보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는 결과물을 납품받지 않는 등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결과물을 납품받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보조금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2026. 4. 9.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나목,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1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9. 29.)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학교법인과 그 임직원으로서 2023학년도 및 2024학년도에 법정부담금을 학교 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이를 학교법인 자산 취득 및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에 전용하였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부외계좌를 운영하며 교비회계 외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전출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필요재정 규모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재정결함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음

② 검토결과 ○○도교육청 및 △△시교육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학교법인 회계 세출 결산서상 피신고자들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에 법정부담금 총 4억 1,415만 원을 소속 학교 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신고자들은 2007년 □□은행에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22년 당시 약 1,220만 원의 자금을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도교육청** : 수익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국유지 매입비를 수익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추가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 20,27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6. 4. 8.
- **△△시교육청** : 수익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국유지 매입비를 수익금으로 집행함으로써 추가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 117,74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6. 3. 5.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나목,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73조(벌칙)

분과 2025-127호

14 기초생활수급비 등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9. 29.)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소득과 재산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았고, 위장 이혼 후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전세임대대여금 지원도 받음

② 검토결과 ○○도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들이 자녀와 거주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차량이 있음에도 재산, 소득을 숨긴 정황이 확인되는 점, 특히 피신고자 1은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업 및 사업체를 운영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도 □□시** : 피신고자들의 위장 이혼 사실 및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지원금 등 총 131,680,000원 환수처분
- **○○도 산하 △△공사** : 피신고자들이 입주한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세보증금(△△공사 지원금 121,850,000원 및 입주자 부담금 28,150,000원) 반환 추진,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우대금리 적용 차액 1,020,000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2026. 1. 5.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벌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5-128호

15 계속종사장려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5. 9. 29.)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거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신고자 1은 거짓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지 않음에도 계속종사장려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 1 본인 스스로 □□업체에 이름만 올려놓고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계속종사장려금을 받고 있다고 말한 점, 피신고자 2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피신고자 1을 거짓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재직증명서는 허위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6. 1. 9.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숙련기술장려법」제1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형법」제347조(사기)

16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5. 11. 1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와 사실혼 관계로, △△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도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가 △△과 함께 자녀의 돌잔치를 한 점, 피신고자가 SNS 등에 올린 다수의 게시글에서 △△을 '남편' 또는 '아이 아빠'라고 칭한 점, △△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도** : 피신고자가 한부모가족지원금 및 주거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93,150,000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 2026. 2. 23.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2장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7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2. 2. 17.)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와 공모하여 구매 대금을 부풀리고,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신청하여 편취함

② 검토결과 ○○도 □□군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감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④ 처리결과

- **○○도 □□군** : 피신고자가 거래처와 공모한 허위거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신고자들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총 83차례, 96,122,340원 상당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복지관 운영비로 부당 사용한 것을 확인하여 환수

 ※ 통보일자 : 2026. 4. 6.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사항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보조금법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18 의료로봇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2. 7. 15.)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부가 주관하는 의료로봇 관련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했음에도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30,364,720원 환수 및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3년 6개월

 ※ 통보일자 : 2025. 4. 7.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사항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보조금법 제41조(벌칙)

19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2. 8. 17.)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피신고자 2 및 피신고자 3의 명의로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로서, ○○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신고자 2 명의의 사업체 직원을 피신고자 3 명의의 사업체 신규채용자로, 피신고자 3 명의의 사업체 직원을 피신고자 2 명의의 사업체 신규채용자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 및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들의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 환수 및 행정조치를 위해 각 송부

④ 처리결과

- **○○부(1차)** : 피신고자 1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11,40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57,000,000원 부과
 - ※ 피신고자 3 명의의 사업체 직원(1명)을 피신고자 2 명의의 사업체 신규채용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건
 - ※ 통보일자 : 2024. 4. 8.
- **○○부(2차)** : 피신고자 1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허위 신규채용자 4명분 지원금 각 11,400,000원씩 총 45,600,000원 환수, 제재부가금 228,000,000원 부과, 보조금 지급제한 5년
 - ※ 피신고자 2 명의의 사업체 직원(4명)을 피신고자 3 명의의 사업체 신규채용자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건
 - ※ 통보일자 : 2025. 7. 4.
- **경찰청** : 피신고자 1, 2, 3의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 송치
 - ※ 통보일자 : 2024. 4. 8.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보조금법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40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2-93호

2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2. 9. 19.)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 대표이사로, ○○부 산하 □□기관이 주관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 및 용역비를 편취함

② 검토결과 ○○부 및 대검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수사와 감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각 이첩

④ 처리결과

- **대검찰청** : 피신고자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피신고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법 위반,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23. 4. 24.

- **○○부**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2,804,299,046원 환수

 ※ 통보일자 : 2025. 3. 24.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나목, 제59조(신고의 처리) 제3항,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21 기초종목 육성사업비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3. 9. 1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협회의 기초종목 육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미집행 예산(영상촬영비, 인쇄비, 전문가 자문료 등)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부당하게 이월 집행함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2020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이 일부만 지출되었고 2020년도 미집행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2021년도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2021년도 집행 당시 지출결의 결재가 반려된 사실이 있는 점,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년도 신규 등록 게시물이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피신고자가 이월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신고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여 피신고자의 예산 지출 적정성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미집행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예산으로 부당하게 이월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17,32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5,260,000원 부과

 ※ 통보일자 : 2025. 8. 18.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부정이익등의 환수)

분과 2023-154호

22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3. 12. 6.)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해양산업 수요기술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비를 편취하고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연구비 편취 및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각 이첩

④ 처리결과

- **□□부** : 목적 외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장비 및 재료를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인건비 3,220,000원을 환수하고, 연구기관에 제재부가금 915,000,000원 및 연구책임자에게 제재부가금 183,100,000원을 각 부과

 ※ 통보일자 : 2025. 2. 27.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23 문화예술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8. 5.)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문화예술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강의 및 축제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관계 기관을 속이고, 보조사업의 강사료 및 축제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아 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도 △△군 등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송부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의 보조사업 강사료 및 축제비에 대한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5. 7. 21.

- **□□도 △△군**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혐의가 인정되어 보조금 4,538,450원 환수, 제재부가금 22,692,250원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조치

 ※ 통보일자 : 2025. 7. 28.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제6호, 보조금법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지방보조금법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7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4-147호

24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9. 30.)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 기간에 ○○기관, □□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에 이첩

③ 이첩사유 피신고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조사와 감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이첩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58,294,340원 환수 및 검찰 송치(기소의견)

 ※ 통보일자 : 2025. 4. 7.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사항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2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9. 30.)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이 없음에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및 ○○도에 이첩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는 □□시에 “고용운전자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신고자가 운전자를 고용한 사유가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 취소”이고 고용운전자가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신고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5. 4. 21.
- **○○도 □□시**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총 262,97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5. 9. 22.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66조의2(벌칙) 제2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52조(벌칙)

26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10. 4.)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사업에 참여하여 실제 직원들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편취함

② 검토결과 ○○부, 대검찰청 등에 송부

③ 송부사유 사회초년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게 한 뒤, 통장과 도장, 계좌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편취한 대화 내용이 담긴 증거와 이체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대검찰청**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기소
 ※ 통보일자 : 2025. 7. 21.
- **○○부**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37,550,000원 환수 및 제재부가금 187,770,000원 부과, 보조금 지급제한 5년 처분
 ※ 통보일자 : 2025. 9. 7.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형법」 제347조(사기),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제37조(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분과 2024-158호

27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10. 28.)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소득을 숨기는 등 수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경찰청, ○○시 등에 이첩

③ 이첩사유 부정수급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그 결과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 및 수사를 위해 각 이첩

④ 처리결과

- **○○시**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70,415,28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5. 4. 15.
- **경찰청**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5. 5. 12.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제49조(벌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9조(벌칙), 「형법」 제347조(사기)

분과 2024-179호

28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 부정수급

1분과위원회(2024. 12. 9.) | 심사보호국장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 1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이고, 피신고자 2는 ㈜□□의 대표인데, 피신고자 1은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피신고자 2가 지시하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을 부정수급함

② 검토결과 ○○부에 이첩

③ 이첩사유 장애인 근로지원인으로 등록된 피신고자 1이 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점, 사업주인 피신고자 2가 피신고자 1에게 회사 식당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접 고용해야 하는 식당 직원의 인건비를 아껴 부정한 이익을 얻은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조사기관의 조사 필요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 1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피신고자 1에게 지급된 임금 총 60,370,000원 환수

 ※ 통보일자 : 2025. 7. 22.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4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3항,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 징수),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29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계기관 송부(2024. 12. 17.)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코로나 시기 매출 감소로 인한 고용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았으나, 이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채용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있어 부정수급 여부 조사가 필요함

② 검토결과 ○○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환수처분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④ 처리결과
- **○○부**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어 총 287,595,000원 환수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25. 3. 17.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제4호,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제4항,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정의) 제6호,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제1항제1호, 제117조(양벌규정)

Ⅲ

공익신고 사건

1. 2025년 공익신고 사건
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3장
공익신고 사건

01



2025년
공익신고 사건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01 건설폐기물의 불법 매립 행위

관계기관 송부(2025. 6. 20.)

02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

관계기관 송부(2025. 6. 10.)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광역시에 소재한 회사 대표로 2025. 4. 17. 8시 38분경 자사 마당에서 불법 소각행위를 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광역시 □구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에게 제기된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나,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사진 자료에서 2025. 4. 17. 8시 38분경 ○○광역시 소재의 자사 마당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을 소각하면서 나오는 연기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광역시 □구** : 피신고자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과태료 80만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3조, 제27조, 제63조, 제68조

03 사료제조업자의 품질검사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5. 8. 4.)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 소재 사료제조회사 대표로, 단미사료를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밥을 대량 입고 후 냉장·냉동 시설 없이 보관하여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심한 상태로 세척·위생 처리 없이 그대로 공정에 투입하였고, 즉석밥을 사료로 만들어 놓고도 사료 검정을 의뢰하지 않은 채 자체 상품명으로 여러 농가에 유통하면서 거래처에서 사료성분검사서를 요구할 경우,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조섬유, 청산 등의 항목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도 경찰청, △△도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사료 원료로 보이는 즉석밥 내용물에 곰팡이가 핀 것이 확인되는 점, 제조수입업자가 피신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료검정증명서에 문서번호, 검정번호와 검정일이 동일함에도 검정결과가 각각 다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피신고자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도** : 피신고자의 「사료관리법」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990만원 납부, 영업정지7일, 고발 조치
- **△△도 경찰청** : 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사료관리법」 제20조제1항

04 선박 최대 승선 인원 초과 탑승

관계기관 송부(2025. 8. 20.)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24년 10월 5일 실향민 대잔치 행사(250여명 규모)를 개최하면서 최대 승선인원 13명인 ○○호에 행사 인원 수송을 위하여 30~50여 명을 승선·운행하는 등 「선박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해양수산부,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자료에 하선 인원이 약 20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피신고자가 승선 인원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최대승선인원(13명)을 초과하여 항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검찰 송치
- **해양수산부** : 최대승선인원(13명)을 초과하여 운행함을 확인하여 관련 해운협회 및 해운조합에 행정지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선박안전법」 제8조, 제16조, 제84조

05 의사 처방전 없는 약사의 전문의약품 판매

이첩(2025. 10. 13.)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약국의 약사로, 2025. 7. 30. 이 사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의약품 구매 영수증 및 동영상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는 이 사건 약국을 찾은 환자가 의사 처방전을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50mg 1정을 8,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95조제1항제9호

06 근로시간 초과 및 외국인 불법 고용

관계기관 송부(2025. 6. 27.)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1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으며, 비자 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고용노동부, 법무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2025년 3월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이 107시간에서 152시간까지 확인되는 점, 공장 취업이 불가능한 F-1, G-1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피신고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고자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 피신고자의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범칙금 1,900만원 통고 처분함
- **고용노동부** : 시정명령, 검찰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07 철거 등 작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

관계기관 이첩(2025. 8. 20.)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2025년 6월 중 ○○시에서 발주한 축제의 부대시설 설치, 관리 운영 용역을 수행하면서 철제 구조 무대를 해체하는 작업자들이 안전모, 형광 조끼, 작업벨트 등 기본 보호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추락 방지 조치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고용노동부에 이첩

③ 이첩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서 철제 구조 무대를 해체하는 작업자들이 안전모, 형광 조끼, 작업벨트 등 기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크레인 작업반경 내에 신호수가 없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비추어 피신고자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고용노동부** : 피신고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38조

08 폐기물 오폐수 무단 배출

관계기관 송부(2025. 9. 22.)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도 △△시에 소재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폐수 배출시설 없이 사업장 내부의 바닥에 불법으로 설치된 배수관을 통해 중장비에서 나오는 유압유 및 폐기물 오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여 주변 토양, 지하수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음

② 검토결과 ○○도 △△시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는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나, 위성사진에서 사업장 인근에 하천이 확인되는 점, 제출된 사진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내부 바닥면에 검정색 오염물질이 확인되며 배수구에 오폐수가 차 있는 모습 및 하천에 검은 오염물질이 떠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도 △△시** : 사업장에서 고철 사출기 분해 작업 중 폐작동유가 인근에 연결된 개울과 산천으로 유출된 사실 및 폐기물 처리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고발 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8조,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09 마약류 방치 및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관계기관 송부(2025. 10. 13.)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치과의원의 대표로,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 구강개구기(Optragate)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미졸람, 케타민을 이 사건 의원 소독실 내에 있는 음식물이 보관된 냉장고에 잠금장치 없이 보관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시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주사기, 주사침, 구강개구기가 싱크대 등에 세척되어 있거나 자연 건조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냉장고 안 냉장실의 제일 윗칸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미졸람이 잠금장치 없이 보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관할 조사기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시** : ○○치과의원에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및 투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잠금장치를 반드시 사용하여 도난·분실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과 음식물을 함께 보관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으나 보건위생 상 위해 예방을 위하여 분리·보관하도록 행정지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의료법」 제36조제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0 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이첩(2025. 12. 1.)

① 신고내용 노래연습장업자인 피신고자는 2025. 10. 29. ○○시 소재의 본인 사업장에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한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 ○○시에 송부

③ 이첩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영수증과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2025. 10. 29. 해당 노래연습장에서 100,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표시된 점, 피신고자가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서** : 해당 노래연습장 관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검찰 송치
- ○○**시** : 영업정지 40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11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무단 이용

관계기관 송부(2025. 10. 13.)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의원의 대표원장으로, 이 사건 의원의 환자였던 신고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의원의 의료광고를 신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다수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에 따르면, 신고자는 이 사건 의원의 의료광고 문자메시지를 2회 받은 것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이 사건 의원의 직원에게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관할 조사기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300만원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2항

12 요양급여 부정수급 및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관계기관 송부(2025. 12. 1.)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산부인과의원의 대표원장으로, 2024년 12월 이 사건 의원에 찾아온 신고자를 18시 이전 진료하면서 일부 질환 치료비는 무료로 해주는 대신 당일 진료비는 야간진료비로 청구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실제 주간 진료를 하였음에도 신고자에게 야간진료비의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정청구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진료받은 시간은 18시 이전이었으나 피신고자는 신고자에게 야간진료비로 청구한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야간진료비로 수납된 점, 피신고자는 신고자에게 일부 질환 치료비를 무료로 해 주었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신고자(환자)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할인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사건 의원의 전체 수진자를 대상으로 '공단에 청구한 심결총진료비'와 'EMR 프로그램상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총진료비를 비교해 본 결과,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들이 발견되는데 이는 미진료 행위가 포함된 허위청구로 보여지므로,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15조

13 진료기록부 등 거짓 작성

이첩(2025. 7. 1.)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으로, 2025년 2월 이 사건 의원에서 환자를 수술 및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피신고자가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처방전을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이첩

③ 이첩사유 신고자는 이 사건 의원의 환자로서 ① 2025년 2월 수술시행 및 진료 등을 피신고자가 아닌 다른 자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후 2025년 2월 진료기록부에는 작성자가 이 사건 대표원장인 피신고자로 되어 있으나, 진료기록부 내용을 놓고 판단할 때 진료 행위자와 진료기록부 작성자가 불일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 및 봉직의사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의료법」 제17조의2, 제22조

14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계기관 송부(2025. 12. 19.)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국유지인 ○○시 일대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피신고자의 건축물 일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 피신고자는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변상금 750여 만원 부과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 제72조

15 인터넷·TV불법 텔레마케팅 및 개인정보 무단 활용

관계기관 송부(2025. 10. 2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들은 통신사 인터넷·TV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면서 상담 시 "1년만 사용하면 위약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사은품을 추가로 지급하며, 월 요금도 22,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가입을 유도하고 실제 3년 약정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1년 뒤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되는 등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포함)를 종이 문건에 기재해 사용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② 검토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

③ 송부사유 전화권유판매업자 현황자료에 해당 상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제출된 사진자료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자료가 보안 조치 없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자가 해당 업체에서 직접 텔레마케팅 영업을 수행하여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조사기관에 신분 공개 동의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들의 관련 법 위반 혐의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피신고자들의 혐의가 확인되어 과태료 750만원 처분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제4항, 제6항

16 비위생적인 조리실 관리, 식품 재사용

관계기관 송부(2025. 12. 24.)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업장을 운영하며 식품을 제조·조리하는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식품을 재사용하고, 부적절하게 원재료를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시 △△구에 송부

③ 송부사유 피신고자는 자주색 행주를 매주 교체한다고 하지만 신고자가 근무하는 8~9개월 동안 교체하는 것을 1번 보았으며 토·일 사용하고 방치 후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에 식기 세척기에 세척 후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점, 남은 초밥·젤리·과자 등을 재사용한다고 주장하는 등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피신고자의 혐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 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시 △△구** : 현장 점검 시, 메인 조리장 및 즉석코너 조리장 내 청결상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하여 과태료 50만 원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17 불법 기숙학원 운영

관계기관 송부(2025. 11. 26.)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 △△구 일대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건물 4층을 불법 증·개축하여 학원 등록 없이 축구교실 및 기숙사를 운영하여 「건축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지만, 해당 건축물이 이미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있었던 점,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해당 불법 건축물에 소재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확인되어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8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자동차 검사대행

관계기관 송부(2025. 12. 12.)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시 △△구 일대에서 2016년 3월부터 장기간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적인 자동차 검사 대행 및 법적 효력 없는 검사지를 발급하였고, ○○소속 개인 소유 차량 소유자들이 국내 법적 효력이 없는 검사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을 부당하게 등록하고 운행하도록 조장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피신고자 관련 상호가 기재된 정비 현황 및 청구 내역서가 확인되고, 신고자가 해당 업체에서 5년간 근무한 사실 등을 진술하겠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관할 기관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경찰청** : 피신고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 결정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

19 상표등록 표시 위반 등

관계기관 송부(2025. 5. 28.)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마스크 판매업체 대표로서 등록하지 않은 상표 또는 상표등록 출원을 하지 아니한 마스크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이 된 상표처럼 표시하고,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에게 제기된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나, 피신고자가 상품번호를 기재하여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여러 가지 효과를 소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고자는 해당 제품이 「상표법」에 저촉되고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내용이 허위과장 광고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지방공정거래사무소** : 피신고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경고 조치 및 과태료 250만원 부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전자상거래법」 제21조제1항제1호

20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 허위 조작

관계기관 송부(2025. 8. 5.)

① 신고내용 신고자는 ○○연구소에서 특별관리물질로 분류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던 중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을 입는 산업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들은 최근까지 해당 물질의 취급 내역을 적절히 기록·관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고용노동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만으로 피신고자들에게 제기된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으나,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고자1이 신고자 등에게 2023. 2. 이후 특별관리물질 취급일지를 2년 이상 경과한 2025. 5.경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내용의 기록 및 관리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점, 신고자가 특별관리물질 취급 도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들의 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워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지방고용노동청** : 피신고자들이 실험실 B124호 페놀에 대한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연구소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함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2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비선임 위반

관계기관 송부(2025. 10. 24.)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인 자치단체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면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지 않고 안전보건 관련 담당 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잘못 지정한 사실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② 검토결과 고용노동부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지만 ① 증거자료를 보면 피신고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국장으로 선임·지정한 점, ② 증거자료 및 고용노동부 해석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치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감독기관에서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고용노동부** : 자치단체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아 과태료 150만원 부과, 자치단체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시정지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3장
공익신고 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22 약사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이첩(2024. 12. 10.)

① 신고내용 약국개설자나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데, 피신고자 1은 ○○도 △△시 소재 약국에서 명찰 및 가운을 착용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미루어 약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1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② 검토결과 ○○도 △△시

③ 이첩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영상자료상 피신고자 1이 약국에서 명찰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피신고자들의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이첩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도 △△시** : 피신고자들 고발 조치 및 피신고자2에 과징금 570만원 부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약사법」 제44조제1항

23 환자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료 부정 청구

관계기관 송부(2021. 11 .5.)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광역시 소재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2021. 1. 1.부터 현재까지 영업 모집인을 통해 환자들을 모집한 후 해당 환자들을 본래 병명과 다른 허위의 병명으로 입원시키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② 검토결과 경찰청에 송부

③ 송부사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영업 모집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시킨 사실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신고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시경찰청** : 피신고자 및 관련자 총 8명의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확인하여 검찰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적용법령 「의료법」 제88조제1호, 제22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제4항

24 무허가 가설 건축물 설치

관계기관 송부(2024. 7. 29.)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는 적법한 허가 없이 본인 소유 ○○시 소재 토지에 무허가 가설 건축물 설치 및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토지를 전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시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고자의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신고자가 제출한 토지대장, 정보공개결정서, 현장사진에 따르면 피신고자의 ○○시 소재 토지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점, 토지개발 허가 없이 또는 허가사항과 달리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피신고자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시** : 피신고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원상복구 시정명령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25 고객 및 가맹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판매 및 불법 수집

관계기관 송부(2024. 7. 29.)

① 신고내용 피신고자 1~3은 각 회사 ○○의 대표, 피신고자 4는 금융정보 중개회사의 대표, 피신고자 5는 금융정보 수집회사의 대표로, 피신고자 1~3은 불상의 일시부터 현재까지 ○○의 회원들이 카드 결제한 금융정보(카드승인번호, 상세품목)를 1건당 원단위의 수수료를 받고 월 수천만 건을 피신고자 4에게 판매하여 제공하고, 피신고자 4는 이를 피신고자 5에게 판매하였음

② 검토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내용, 피신고자 3과 직원 간 대화내용 녹취록을 종합한 결과, 피신고자 3이 1건당 원단위로 금융정보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피신고자들이 금융정보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거래행위 등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 : ○○이 특정 기간 중 관련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영수증 거래정보 수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의 회원의 카드 거래내역과 직접 결합하여 이용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에 기관주의, 과징금 3,539백만원 및 과태료 36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징계처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고대상 정보가 개인정보가 아닌 금융정보에 해당하여 금융감독원으로 이송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9조, 제32조, 제33조

26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허위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4. 8. 20.)

① 신고내용 피신고업체는 정보통신공사 및 시행공사 매출 외에 총 매출금액 중 20%~30% 정도의 유통(납품) 매출이 있는 회사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신고를 진행하면서 보험료를 축소 신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음

② 검토결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③ 송부사유 신고자가 관련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고자의 혐의를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고자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확정신고 시 축소하여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한 후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기관에 송부하기로 함

④ 처리결과

- **근로복지공단 ○○ 지사** : ㈜△△ 관련 사업장 보험료 과소신고 확인 요청에 관하여 사업장 제출자료 및 공익신고자 의견을 바탕으로 2022년, 2023년 산재, 고용 확정보험료를 재정산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보험료 추가징수 결정
 * 2022년도 산재, 고용 추가징수 결정금액(가산금 포함) : 84,804,250원
 * 2023년도 산재, 고용 추가징수 결정금액(가산금 포함) : 77,654,950원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관련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24조

Ⅳ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2025-17호

01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2.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1. 23.)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청소년쉼터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4억 7,357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 1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가족관계에 있는 피신고자 3, 4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제공 명목으로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개인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청소년쉼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4억 7,357여만 원의 환수 처분이 이루어져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가 되었으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

④ 결정결과 8,377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44호

02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3.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2.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0억 5,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 소속 활동지원사인 피신고자들이 계약된 보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의 가족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의 카드를 부정하게 결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하였다고 공공기관에 신고함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6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며, 피신고자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가목(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신고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10억 5,6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 사유를 적용함

④ 결정결과 1억 2,5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의2, 제23조, 제25조 등

제2025-274호

0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8. 18.) | 보상심의위원회(2025. 7. 2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8,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4대 보험에 신고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고용한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들에게 6억 6,1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함

④ 결정결과 3,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

제2025-153호

04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수령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5. 12.) | 보상심의위원회(2025. 4. 2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부당수령 사건」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6억 6,1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6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들 소속 직원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대상이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공공기관에 신고함
- 일자리 안정자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며, 피신고업체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제6호라목(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따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신고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들에게 6억 6,1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함

④ 결정결과 5,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의2, 제26조 등

제2025-188호

05 「AI 살처분 보상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6. 9.) | 보상심의위원회(2025. 5. 29.)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AI 살처분 보상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5억 2천 703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양계농장 대표인 피신고자가 AI 살처분 시 육용종계를 산란종계로 속이고 농장일보를 허위 조작하는 방법으로 AI 살처분 보상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행위(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라목)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5억 2천 703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억 1,378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25-191호

06 「사무장병원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6. 9.) | 보상심의위원회(2025. 5. 29.)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무장병원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21억 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비의료인인 피신고자가 의료인들과 함께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부정수급액 26억 9,61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 21억 200여만 원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하고 환수금액이 결정보상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부 지급함

④ 결정결과 1억 1,48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

제2025-231호

07 「연구기자재 무단반출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7. 7.) | 보상심의위원회(2025. 6.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연구기자재 무단반출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1,700여 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한 대학 연구기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사적으로 거래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을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피신고자가 무단으로 반출한 연구기자재를 해당 공공기관에 반환하였고, 반환된 물품의 감정평가액인 1,700여 만 원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50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233호

08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7. 7.) | 보상심의위원회(2025. 6.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요양급여 비용 부정수급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6억 1,000여 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병원에서 의료급여 입원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등을 허위 등록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음을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해당 공공기관이 피신고병원에 부정수급액 1억 7,000여 만원 및 과징금 4억 3,000여 만원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있었으며, 이 사건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2,00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실제 환수된 금액이 소액이어서 산정보상금(1억 여 원)의 일부 지급]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276호

09 「창업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8. 18.) | 보상심의위원회(2025. 7. 30.)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창업기업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2억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포상 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제3항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창업기업 지원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2억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함

④ 결정결과 2,5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포상 사무 운영지침」 제21조제3항 등

제2025-401호

10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1.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10. 30.)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6,036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의 직원이 "실제로는 회사 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장애인 근로지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6,036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811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443호

11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9.) | 보상심의위원회(2025. 11. 27.)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국·공유지 불법 무상양도 신고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375억 3,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조합에서 유상매입해야 하는 국·공유지를 무상매입하도록 해당 구청에서 사업시행 인가 조건을 불법 변경승인해 준 사항을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당초 인가조건으로 재변경하여 해당조합으로부터 국공유지 매각 대금 375억 3,000여만 원을 완납받았으며, 이 신청 건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8억 2,0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482호

12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22.) | 보상심의위원회(2025. 12. 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4,58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의2, 제25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사회복지시설 소장인 피신고자가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며, 피신고자들의 행위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가목(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신고는 부정청구등의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시설에 4,580여만 원의 환수결정 및 폐쇄 처분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37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공재정환수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3조의2, 제25조 등

제2025-483호

13 「의료취약자 지원사업비 등 편취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22.) | 보상심의위원회(2025. 12. 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의료취약자 지원사업비 등 편취 신고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28,41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병원의 원장, 행정원장, 행정부장, 총무과장, 간호과장인 피신고자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의료취약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간호사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실제 각 사업의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전담 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원사업비를 편취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병원에 28,41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6,682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제2025-484호

14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22.) | 보상심의위원회(2025. 12. 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9억 5,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꾸미거나,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제재부가금 등 합계 9억 5,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억 7,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68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77조, 제81조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2025-77호

15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3.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2.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8,58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인력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을 주·야간으로 고용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94조 및 제102조 등에 따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해당 공공기관이 피신고업체 등에 범칙금 합계 8,580여만 원을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 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2,57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

제2025-81호

16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특혜제공 등 사건」 신고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3.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2.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등을 신고한 후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② 검토결과 신청인의 병원 치료비용과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이 이 사건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군사기밀보호법」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수사기관의 수사단계 대응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의 병원 치료비용 및 변호사 선임비용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함

④ 결정결과 통원치료비 588,000원, 입원치료비 2,832,000원, 합계 3,420,000원의 구조금 지급 결정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의 구조금은 한도액 상향 기준 마련 이후 재논의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

제2025-120호

17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4. 7.) | 보상심의위원회(2025. 3. 27.)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위반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6,138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소비기한 경과된 축산물을 보관, 냉동 전환,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등에 따라 벌금 등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해당 공공기관이 피신고업체 등에 과징금, 벌금 등 합계 6,138여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227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

제2025-373호

18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0. 20.) | 보상심의위원회(2025. 9. 25.)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2억 7,610여 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온라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신고업체 대표이사 및 부장인 피신고자들이 직원들에게 허위의 여성 이용자 계정을 생성하여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64조의2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등 합계 2억 7,610여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납부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4,01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등

제2025-412호

19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1.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10. 26.)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 행위 사건」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4,95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 성적서를 발급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20조 등에 따라 벌금 등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해당 공공기관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4,950여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④ 결정결과 1,485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

제2025-417호

20 「육아휴직 급여 등 부정수급 신고 사건」 관련 구조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1. 10.) | 보상심의위원회(2025. 10. 30.)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육아휴직 급여등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로부터 공갈,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피신고자 고소에 따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출되었다면서 이를 구조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

② 검토결과 신청인의 수사기관 수사 대응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 지출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등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육아휴직 급여등 부정수급 의혹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함
- 위 신고 이후 피신고자가 신청인에게 신고 사건의 취하를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취하하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형사 고소를 예고하였고, 경찰 수사 결과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고와 신청인의 형사고소 대응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
- 신청인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과 이 사건 신고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심의함

④ 결정결과 변호사 선임비 2,200,000원에 대하여 구조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제2025-449호

21 「의료기기 불법 제조 및 유통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1.) | 보상심의위원회(2025. 11. 20.)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의료기기 불법 제조 및 유통 사건」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1,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의료기기 제품 생산 시 허위자료로 제조허가를 취득하고 허가받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였다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 및 제36조 등에 따라 벌금 등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과 추징금 합계 1억 1,700여만 원이 부과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함

④ 결정결과 1,79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제23조 등

제2025-502호

22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신고 사건」 관련 보상금 신청(인용)

전원위원회(2025. 12. 22.) | 보상심의위원회(2025. 12. 4.)

① 신청내용 신청인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사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② 검토결과 위 신고로 인하여 10억 64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등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③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수입 농산물을 1차 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 건 위반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벌금 등 부과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신청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피신고자 등에 추징금 합계 10억 640여만 원이 부과되었는바,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 있었으며 이 신청 건 공익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나, 일부 감액사유를 적용하고 환수금액이 결정보상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일부 지급함

④ 결정결과 9,451여만 원의 보상금 일부 지급 결정

⑤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등

V

참고 자료

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제5장
참고 자료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가. 부패신고 및 처리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제60조

신고대상 : 부패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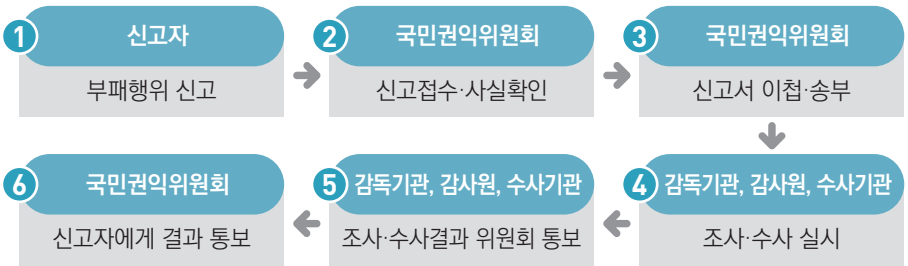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부패행위 신고 가능
-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기재), 증거 첨부

| 국민권익위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 등이 충분하지 않으면 조사기관 등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나. 공익신고 및 처리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신고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500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신고주체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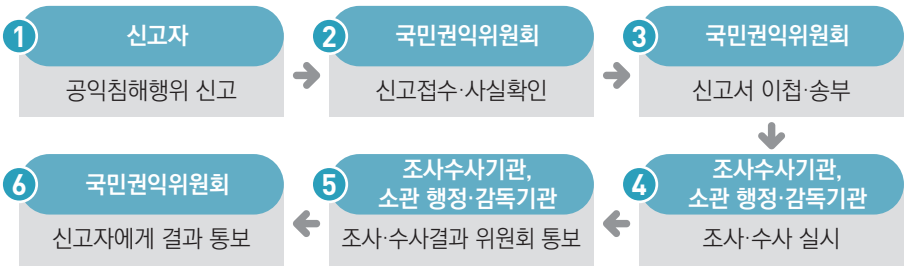
- (주체) 누구든지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침해행위 신고 가능

| 공익신고 대상 기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소관 행정·감독기관
- 국회의원

- (방법) 기명의 문서(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신고대상 등 기재), 증거 첨부

| 국민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처리 절차 |



※ 신고자는 신고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가능
※ 국민권익위는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조사·수사 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 가능

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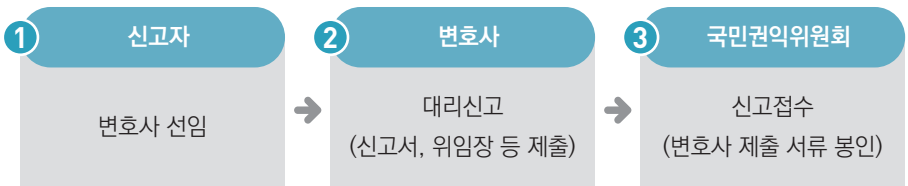
주요 내용

- (개요) 신고자가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만 밝혀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제도
- (신고기관)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
- (신고대상)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행위,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 (신고방법)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에 제출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국민권익위에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자문변호사단) 신분노출 및 불이익조치 우려가 높은 내부 신고자가 비용 부담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

비실명 대리신고 절차



제5장
참고 자료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보상제도

가. 신고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협조자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부패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신분공개 경위 확인, 위반자의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신변보호

- 신고로 인해 신고자, 협조자 또는 그 친족·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 (신변보호 사항) 특정시설에 보호, 신변 경호,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책임감면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 또는 면제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요구,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를 의무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하는 것을 금지(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또한,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 조치 유형 |

불이익 조치 유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불이익조치시 형사처벌
①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③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④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⑤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⑥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⑦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⑧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⑨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보호조치는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나.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 (지급대상)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한 신고자(부패신고 보상금),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한 내부 신고자(공익신고 보상금)
- (지급요건)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	공익신고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벌금·과료·과징금·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벌칙 또는 통고 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과징금의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등

- 보상금 지급금액

부패신고	공익신고
•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 (지급 한도액 폐지, 하한 30만원)	• 보상대상가액의 최대 30% (지급 한도액 폐지, 하한 30만원)

포상금

- (지급요건) 신고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 재량으로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3)
- 포상금 지급사유(지급금액 : 5억원 이내)

부패신고	공익신고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과징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구조금

- **(지급대상)**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 **(지급요건)** 신고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구조금 지급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99개	
72개	〈건 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7	가축전염병 예방법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건강검진기본법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4	검역법
26	결핵예방법
3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49	공중위생관리법
64	국민건강보험법
65	국민건강증진법
68	국민영양관리법
7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104	노인복지법
1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0	농약관리법
117	담배사업법
1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4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146	먹는물관리법
147	모자보건법
171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72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17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187	비료관리법
192	사료관리법
21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1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3	소금산업 진흥법
24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25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60	식물방역법
261	식물신품종 보호법
26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6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64	식품산업진흥법
265	식품안전기본법
266	식품위생법
279	약사법
280	양곡관리법
28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11	위생용품 관리법
317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22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23	의료기기법
3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25	의료법
330	인삼산업법
33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3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34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8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8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89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392	종자산업법
408	지역보건법
41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22	청소년 보호법
432	축산물 위생관리법
43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44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50	학교급식법
451	학교보건법
477	혈액관리법
478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481	화장품법
490	환자안전법
49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31개	**〈안 전〉**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6	건설기계관리법
17	건설기술 진흥법
18	건설산업기본법
20	건축물관리법
22	건축법
23	건축사법
28	경비업법
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43	공연법
51	공항시설법
53	광산안전법
5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5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56	교통안전법
5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6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73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7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82	궤도운송법
9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5	기계설비법
1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11	농어촌도로 정비법
112	농어촌정비법
11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1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8	도로교통법
129	도로법
130	도선법
132	도시가스사업법
13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137	도시철도법
141	동물보호법
14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74	보안관찰법
1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7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9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1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8	사회복지사업법
206	산업안전보건법
202의2	산림재난방지법
2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19	석면안전관리법
222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224	선박안전법
22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226	선박직원법
228	선원법
22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3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5	소방기본법
23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7	소방시설공사업법
238	소방장비관리법
243	송유관 안전관리법
251	수상레저안전법
25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25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5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71	아동복지법
27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8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85	어선법
28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9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9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30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309	원자력안전법
310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13	위험물안전관리법
315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38	자동차관리법
341	자연재해대책법
3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60	재난안전통신망법
363	재해구호법
36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65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368	전기공사업법
369	전기사업법
370	전기안전관리법
37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375	전력기술관리법
3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85	정보통신공사업법
391	제품안전기본법
396	주차장법
397	주택법
402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409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4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41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15	집단에너지사업법
4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19	철도안전법
42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24	청소년활동 진흥법
425	청원경찰법
426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2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3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6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45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59	항공보안법
461	항공안전법
462	항로표지법
463	항만법
466	해사안전기본법
467	해상교통안전법
468	해양경비법
46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48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4	화학물질관리법
82개	**〈환경〉**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6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7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2	내수면어업법
115	농지법
12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21	대기환경보전법
126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13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35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14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5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	물환경보전법
15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16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16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94	사방사업법
20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201	산림보호법
20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0	산지관리법
215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2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23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240	소음·진동관리법
242	소하천정비법
244	수도법
24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48	수산업법
249	수산자원관리법
25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257	습지보전법
270	실내공기질 관리법
276	악취방지법
27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1	양식산업발전법
286	어장관리법
287	어촌·어항법
293	연안관리법
29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0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3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0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32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340	자연공원법
340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42	자연환경보전법
3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4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6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39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11	지하수법
430	초지법
439	토양환경보전법
443	폐기물관리법
44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448	하수도법
449	하천법
4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6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47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1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7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2의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47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475	해양환경관리법
485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486	환경보건법
48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487의2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488	환경영향평가법
48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03개	**〈소비자 이익〉**
10의2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1	개인정보 보호법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계량에 관한 법률
3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34	고용보험법
3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6	공인중개사법
52	관광진흥법
58	국가기술자격법
62의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85	근로복지기본법
8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9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92	금융지주회사법
10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114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24	대외무역법
12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145	말산업 육성법
14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5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54	물류정책기본법
1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6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6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165	방송법
177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78	보험업법
181	복권 및 복권기금법
18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195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9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9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0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05	산업디자인진흥법
2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9	산업표준화법
211	상표법
212	상호저축은행법
213	새마을금고법
2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21	석탄산업법
239	소비자기본법
24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4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0	수산종자산업육성법
26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9	신용협동조합법
27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288	에너지법
29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91	여신전문금융업법
296	영유아보육법
29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9	예금자보호법
30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05	외국환거래법
306	외식산업 진흥법
307	우편법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1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16	유아교육법
319	은행법
32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33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3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37	자격기본법
3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355	장애인복지법
361의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37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73	전기통신기본법
374	전기통신사업법
376	전자금융거래법
37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7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79	전자서명법
380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8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38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9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8	중소기업은행법
40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413	직업안정법
418	철도사업법
433	축산법
43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40	통신비밀보호법
44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64	항만운송사업법
476	해운법
4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2개	**〈공정한 경쟁〉**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7	경륜·경정법
69	국민체육진흥법
72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11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18	유통산업발전법
328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33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6	저작권법
38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394	주민투표법
39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4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3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4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55	한국마사회법
460	항공사업법
89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31	고등교육법
3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0	공공주택 특별법
41	공동주택관리법
4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4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5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57의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59	국가보안법
60	국가재정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6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6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67	국민연금법
71	국유재산법
7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79	군사기밀 보호법
8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81	군형법
83	귀속재산처리법
84	근로기준법
8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9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9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97	기초연금법
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06	노후준비 지원법
1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5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58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160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16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6	방위사업법
16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16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70	병역법
1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18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84	부정수표 단속법
1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88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189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193	사립학교법
19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1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72	아동수당법
297	영해 및 접속수역법
300	예비군법
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34	임금채권보장법
34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4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348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34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5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연번	분야 및 법률명
35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5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356	장애인연금법
35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36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362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384	전파법
393	주거급여법
4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40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404	지방세기본법
40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6	지방재정법
41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21	청소년 기본법
423	청소년복지 지원법
428	초·중등교육법
434	출입국관리법
44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456	한부모가족지원법
47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48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용안내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우　　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　　스　(044) 200-7972

인 터 넷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전화상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2025

부패·공익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 24 집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 행 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 행 일 | 2026년 10월

본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Tel. 044)200-7688 Fax. 044)200-7943